

○ 질문내용 (6)

-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혼외출생아동, 혼혈아, 소년, 소녀가장세대, 고아, 미아, 장애아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초보고서 제출 이후 취한 특별보호 조치와 지원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6)

정부는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관 운영, 전세자금으로 2,500만원까지 지원,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립지원센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공동생활로 인한 의타심, 나약한 정신력을 해결하고 사회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군부대 입소훈련,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실시등의 프로그램을 도입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하여는 생계, 교육, 의료 보호등 물질적 지원을 매년 향상시키고 있으며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별로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결연후원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생활지도 등을 통해 비행·탈선을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보호아동의 입양정책은 국외입양을 매년 감축하는 한편, 국내가정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게는 주택분야대출 우대(1천만원 추가),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등 교육비 면제, 소득세 및 교육비 등 소득공제 혜택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아 입양가정에게는 매월 양육비와 의료비, 18세 까지 무료진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질문내용 (7)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회복을 돕기 위하여 최초 보고서 제출 이후 추가한 조치

○ 답변내용 (7)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이 의원입법으로 진행중이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96.10.8. 설립하여 조사연구 및 국민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학대, 성폭력,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으로 아동복지법개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질문내용 (8)

- 유엔아동권리위의 “고용허용최소연령에 관한 ILO 협약 제138호” 비준 권고에 대한 견해 및 향후 비준계획

○ 답변내용 (8)

ILO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은 15세 미만자(개도국은 14세)의 취업을 금지하면서, 연소자의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는 18세(일정조건하에서는 16세)를 하회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는 '97.3.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취업의 최저연령을 종전 13세에서 15세로 상향조정(동법 제62조)한 바 있으며 유해·위험사업장의 경우는 18세미만자의 고용을 금지(동법 제63조)하면서, 이에 대한 위반시 형사처벌규정(제112조 및 113조)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이수후 대부분 상급학교에 진학(99.8%)하고 있으므로 협약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ILO 협약 제138호의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등 소정의 절차를 밟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무부처 : 노동부

○ 질문내용 (9)

-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소년사법제도의 포괄적인 개혁을 위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 및 향후 계획

○ 답변내용 (9)

정부는 소년사법제도의 개혁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의 무료법률구조, 청소년 자원봉사통합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교육기능강화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96.6.1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하여 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으로하여금 무료로 형사사건의 변호하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무료로 형사혜택이 변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위원, 보호관찰소 보호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으로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를 96.7.1부터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 범죄자의 보다 효율적인 사회복지와 범죄 예방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범죄자에 대한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7.1.8부터 소년원의 명칭은 "학교"로 변경하고 소년범죄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무부처 : 법무부

○ 질문내용 (10)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 위원회 회의록, 위원회의 권고안을 홍보하기 위하여 취한 구체적인 노력

○ 답변내용 (10)

정부는 각종 정책자료 배포 및 홍보 그리고 학술 세미나등을 통하여 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 (3)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특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의한 아동권리협약의 홍보가 적극 행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정부보고서, 회의록, 권고 등에 대한 홍보는 현재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바, 앞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관련 심의 자료 및 유엔 권고안에 대한 국가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질문내용 (11)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민간단체들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민간단체와의 협력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

○ 답변내용 (11)

아동권리보호를 위하여는 정부와 민간의 구별이 없으며 많은 부분에서 민간단체가 보다 적극적이며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단체의 아동보호활동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복지시설외소아동의 자립지원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의 자립지원센터 설치
-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설립하여 민간복지재단과 협력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사업 추진 지원
-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 보육정보망(KDA-NET), 한국복지재단에 미아찾기 전산망 구축 지원 및 아동단체협의회와의 아동생존, 보호, 발달에 관한 세미나 지원
- 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결연 후원등 민간참여 촉진 및 한국복지재단에 매년 지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수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소속단체 및 개인(이용교, 장호순, 안창도, 노혜련-존칭생략)
발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간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제목: 연대회의 출판사업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인사드립니다.

94년 정부보고서 제출, 95년 연대회의 결성, 민간보고서 작성, 조약홍보사업,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참가, 96년 1월 유엔아동권리본회의 모니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안 발표로 이어졌던 숨가쁜 사업들을 기억해 봅니다. 아쉽게도 지난 5월 계획되었던 출판사업이 필진문제와 책임선의 부재(간사를 맡았던 저의 9개월간 해외연수로 인한 실무의 공백이 큰 이유였습니다)로 1년간이나 중단되었습니다. 돌아와보니 소중한게 모였던 원고들이 교정이나 번역을 할 일손이 없어서 먼지에 덮혀 있었습니다. 이점, 힘써주신 연대회의 소속단체와 개인참여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덮어둘 수 없는 소중한 사업이기에 여러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얻어 다듬었고, 계획되었지만 필진이 확보되지 못한 원고는 아쉽지만 포기한 가운데 1년간 연락이 끊겼던 출판사에 다시 찾아가 읍조하면서 책이 다시금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책은 "어린이의 인권, 세계의 약속-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올 5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값진 선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출한 출판기념회와 연대회의 이후 사업을 위한 모임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린이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1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란

청소년 인권의 상황과 제언-이용교(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각 조항 해설-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아동권리 국제협약 및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연구-노혜련(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2부 유엔과 어린이 인권

정부보고서

민간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정부질문 및 대한민국 정부답변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고안

별첨: 함께 읽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쉽게 다시 쓴 조약)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수신: 각 단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담당자
발신: 인권운동사랑방(류은숙)
제목: 연대회의 출판서적 홍보 요청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 단체 기관지나 소식지에 연대회의 출판서적을 광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엮음/ 내일을 여는 책 펴냄/ 97년 5월 2일 출간/ 270쪽/ 7,000원

5월, 아이들의 선물을 사기전에 내가 먼저 읽어야 할 책

5월, 제자들의 눈을 보기전에 선생님이 새겨야 할 원칙

5월, 아이들의 문제를 찾기전에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상식

이 한권에 담겨 있습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가 채택하여 이듬해 11월 국제법으로 공포되었습니다. 95년 12월 31일 현재,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 수는 190개 국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지닌 국제인권조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91년 12월 20일 이 조약을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으며, 조약 44조 1항 “조약이 발효된 후 2년 이내 그후 5년마다 조약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에 따라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분야의 21개 민간단체와 관심있는 개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밑바탕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상황을 모니터하고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가 엮은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에는 아래와 같이 조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4개의 논문과 조약의 이행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제1부 청소년의 인권과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청소년 인권의 상황과 제언(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각 조항 해설(류은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장)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및 세계정상 행동계획의 국내 이행상황에 관한 연구(노혜련: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이기범: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제2부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에 관한 의견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 최초 보고서/ 대한민국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이행에 관한 민간단체보고서/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1차 회기전 작업집단이 제기한 질문과 대한민국 정부 답변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1차 회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결론적의견

참고자료/함께읽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주문처

내일을 여는 책

전화: 707-3833~5 팩스: 707-3835

우편요금은 출판사가 부담하여 보내드립니다. 전화로 책을 주문하실 때는 입금날짜와 입금하실 은행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은행계좌번호

국민은행 201-24-0527-002

예금주 황덕명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주요활동

-95년 2월 9일 : 민간보고서 제출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준비모임

-95년 3월 15일 : 연대회의 결성식

-95년 5월 : 중앙일보사와 공동기획으로 어린이의 달 기획시리즈 7회 연재 / 조약홍보를 위한 만화유인물 2만부 제작, 배포

-95년 7월 7일 : 민간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95년 11월 22일 :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에 민간대표로 초청 받아 참가, 위원회는 "한국의 민간단체보고서가 논리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해 실천지향적이다" 평가

-96년 1월 18-19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11차 회기 옵저버로 참석, 대한민국 정부 답변 모니터

-96년 1월 26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발표

-96년 2월 1일 연대회의 기자회견 : 위원회 참가보고 및 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홍보, 연대회의 입장 발표

-97년 5월 2일 :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유엔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출판

4월 29일 부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새주소

주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110-522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http: // www. interpia.net/~rights

통신ID: rights(천, 하) / 인권사랑(나우)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 · 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어린이 ·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어린이 ·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741-5363

~~인권이민~~ ~~인권이민~~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3/F., Choyang Bldg., Galwol-dong, Yongsan-gu,
140-150, Seoul, KOREA

Tel: (822)-715-9185 / Fax: (822)-715-9186

To: ~~Annenieke Wolhuis~~
fax: (41-22)-740-1145

From: Yu Eun-Suk,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c/o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Date: ~~November 6, 1995.~~

96년 2월 16일 박동은
영국에

Dear

지난 1월 25일 CRC에서 보내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은 잘 받았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에서는 이를 받아 연대회의 소속 21개 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언론에 권고내용을 보도요청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주간지 시사저널에 민간단체 대표 류은숙씨가 본회의 참가 및 회의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5회 발행하고 있는 <인권하루소식> 취재과정에서 새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건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정부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했다고 보고한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18일 한국정부는 정부보고서 사전심의결과 유엔아동권위원회가 “조약을 홍보·교육하기 위한 조치와 그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수단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사항에 대해 “95년 8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다”고 답변했다. 한국정부는 “적십자사, 유니세프, 연구기관, 대학, 신문사, 아동보호기관 등의 민간단체들과 정부 관련 부처로 구성했다”면서 이 위원회가 △조약의 교육 △정부에 조약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조약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조정역할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부의 답변에 따라 유엔아동권위원회가 최종권고안에서 “최근에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가 설립되었음을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인권하루소식>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위원회는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저 지난해 8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박동은, 유니세프)가 약 10여명의

정부, 민간 단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초빙, 식사를 한 정도의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동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아동권리에 대해 정부보다 민간이 나서서 이의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옳다는 취지로 전문가들을 모았다"면서 "위원장을 선임하지도 않았고, 사업계획 같은 것도 없지만, 이후 모임을 확대해 위원회를 만들 계획은 갖고 있다"고 말해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유니세프에서 만든 한 차례의 모임을 국가위원회의 설립으로 거짓 보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며, 아울러 이 사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roupe des ONG pour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 l'enfant
Grupo de ONGs para la 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del niño

리베라 데 라 오 산 시

TELEFAX

TO: Ms. Eun-Suk Yu
FAX: 00822-715-9186
FROM: Laura Theytaz-Bergman
FAX: +41-22-740-1145
DATE: February 29, 1996

Dear Ms. Yu: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fax of February 16th with regards to 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 have submitted a copy of your letter to the Secretary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he will distribute it to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for their consideration during their next session in May.

Thank you very much for drawing our attention to this discrepancy.

Best regards,

Laura

Laura Theytaz-Bergman
CRC/NGO Liaison Officer

안데리외리 드 리브라 데 라 오 산 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리베라 데 라 오 산 시에게
제출합니다. 사구관은 "아동권리 국가위원회"
구성인 관련 거짓보이기 대해 위위리 위위리에게
배도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대해
관심을 갖게끔하기 위해 안데리외리
기부사입니다.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roupe des ONG pour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 l'enfant
Grupo de ONGs para la 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del niño

TELEFAX

TO: Ms. Yu Eun-Suk
CC: Mr. Lee Seong-hoon
FAX: 00822-715-9186
FROM: Laura Theytaz-Bergman
FAX: +41-22-740-1145
DATE: May 2, 1995

Dear Ms. Yu:

Mr. Lee Seong-hoon suggested that I contact you as coordinator for the Korea NGO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I was pleased to learn about the formation of a coalition in Korea as they have proved to be very effective in a number of countries. I was also happy to learn that the alternative report is nearing completion. The government report has finally been printed and I will send you a copy of the official United Nations document in the mail today.

10/11-2000
The NGO Group will be able to provide funding for one representative of the coalition to come to Geneva to present the report to the Committee during its pre-sessional working group in October. The working group will be meeting from October 16-20 and I should have the exact date that the report of Korea will be examined by the end of June. The Committee will spend approximately three hours during its working group examining the report of Korea. The recommended time for presentation of the NGO report should be 15-30 minutes although there is no real limit. The Committee will then hear short presentations from United Nations agencies (UNICEF, UNHCR, ILO) who wish to provide the Committee with information in their field of expertise. All these presentations should take no more than an hour which would leave two hours for questions and discussion.

If you feel that a slide presentation would help to emphasize your concerns, we would be happy to make arrangements for a slide projector to be available. In the past, some NGOs have shown films although these are usually organized during the lunch hour in order not to take up time

during the meeting. This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in helping Committee members understand the reality in a country.

Whatever method you choose, be sure to leave plenty of time for discussion as this will help the Committee in developing its list of questions to be submitted to the government. NGO participation in the working group allows Committee members to ask questions and acquire another view of the government report. It may also help the Committee to obtain a clear picture as to whether the report accurately reflects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allow Committee members to set priorities and to identify controversial issues.

I hope that this information has given you some insight as to the functioning of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It is a unique procedure that considers NGOs as partners in the examination of the government report. I am sure that you will find it to be a worthwhile endeavor.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should you have any additional questions. I look forward to receiving the alternative report of the Korean coalition.

Sincerely,

Laura Theytaz Bergman

Laura Theytaz-Bergman
Coordinator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3/FI. Joyang Bldg. 71-12 Kalwol-Dong Yongsan-Gu, Seoul 140-150, Korea

TEL: 82-2-715-9185 FAX: 82-2-715-9186

FACSIMILE COVER SHEET

To: Ms. Erina White

From: Eun-Suk Yu,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c/o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Date: February 16, 1996

DESTINATION FAX NO.: (41-22) 740-1145

Total number of pages including cover page: 2

If you do not receive all of the pages, or they are not fully legible, please call me as soon as possible on (82) (2) 715 9185.

Dear Ms. White:

Thank you for sending us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Korea that have been adopted by the eleventh session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has distributed the paper to our member NGOs, and circulated to the press for press release.

The reason I am writing this letter is to inform you of a shocking news. *The Human Rights Daily New* which Sarangbang publishes five times a week has discovered that Korean government has lied about the formation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during the review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en we received the report, we were curious to find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elcoming "the recent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B.4) So, *The Human Rights Daily New* did a little investigation of its own, and found out that it was just a hoax.

Following are what *The Human Rights Daily News* discovered. The Korean government contended that 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as formed on August 1995 comprising of related government organ and the NGOs such as Red Cross, Unicef,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press, Child Protection Agency. Its functions are to educate, to pressure government to enforce the convention, and to coordinat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GOs on comply with the convention.

However, the National Committee was never born. On August 1995, 'Unicef Korea' (Secretary: Dong-En Park) invited ten professionals who participated in governmental and NGO reports and had a dinner together. According to Mr. Park, "We invited those professions because we felt that the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eed to stand up to protecting rights of child," and said that "we neither elected a chairperson, nor have any projects, but after that meeting we had a plan of forming a committee." This clearly proves that there was no National Committee, and the Korean government used the dinner party to its advantage.

We regret that we have to report this. Please inform this finding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Sincerely yours,

Yours sincerely,

LEE Dong-joon
For Na Yu Sun-uk, KOREA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3/F., Choyang Bldg., Galwol-dong, Yongsan-gu,
140-150, Seoul, KOREA

Tel: (822)-715-9185 / Fax: (822)-715-9186

To: Laura Theytaz-Bergman, c/o NGO Group for the CROC,
Fax: (41-22)-734-0558
From: LEE Seong-Hoon, c/o Sarangbang Center for HR / KOHRNET

Dear Ms. Laura,

April 29, 1995

Greetings from Seoul! Hope that you are fin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letter dated April 25, 1995. I was very happy to have received your letter as I was about to write to you to follow up the matter.

Since you first wrote a letter addressed to Ms. Chang on December 20, 1994, several NGOs interested in the rights of the child in Korea have met four times to discuss how to prepare an alternative report. As a result, on March 15 1995, (when I was in Geneva) the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was formally formed as Sarangbang Center for Human Rights suggested. The Coalition is composed of about 20 NGOs and the Sarangbang Center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on work.

The first draft of about 30 pages prepared by about 10 experts are now reviewed and edited. The final draft will be ready during the middle of May and will be translated into English by the end of May. We believe that it will be submitted to the Committee and you early June.

That's the information I got from Ms Yu Eun-Suk, a responsible coordinator who belongs to Sarangbang Center. As I explained, the KOHRNET is composed of 9 Human Rights NGOs but not all the member organizations are working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stead, 4 member organizations including Sarangbang Center are committed to the project. Therefore I would suggest to you to communicate with Ms Yu from now on. Of course I will try my best to facilitate the communication whenever necessary.

As you said before, I presume that your organization will pay for one ticket and accommodation during the pre-sessional working group to be held from October 16 to 20, provided that our alternative report is submitted by July 1,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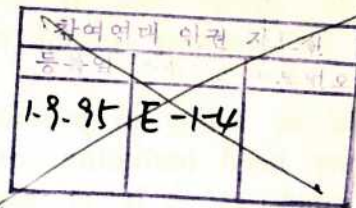
One question: we are wondering how much time will be given to us for presentation of our report and what could be creative and 'impressive' ways of presenting the report. Do you have any idea or advice? Do you think that slide presentation or other instrument is possible and more effectiv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kind support and cooperation.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Yours sincerely,



LEE Seong-hoon
For Ms Yu Eun-suk, KOREA NGOs Coalition for the Rights of the Child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roupe des ONG pour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 l'enfant
Grupo de ONGs para la 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del niño



December 20, 1994

Ms. Soh Young Chang
KOHNET
Sarabang Center for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4F Kiwon Bldg.
404 Hangangro 2-ka Yongsan-ku
Seoul 140-012
Republic of Korea

Dear Ms. Chang:

Ms. Rachel Brett of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Quakers) suggested that I contact you. As you may already know,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submitted its initial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mmittee is due to review this report during its pre-sessional meeting in October 1995. During this review, the Committee will take into account all pertinent written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from non-governmental sources.

As Coordinator of the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 am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eives specific, reliable and objective information that deals with all the different area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order for the Committee to effectively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preparation of "alternative reports" by NGOs or coalitions of NGOs has been found to be a useful tool in ensuring that the Committee receives the necessary information.

Rachel mentioned that alternative reports had been prepared in the past for other treaty bodies and thought that member organizations of Kohrnet may be interested in preparing a report on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this end, I have enclosed a copy of the government report for your consideration and a guide on the preparation of NGO information. Please feel free to distribute the report to any interested organizations.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roupe des ONG pour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 l'enfant
Grupo de ONGs para la 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del niño

TELEFAX

TO: Ms. Yu Eun-Suk
FAX: 00822-715-9186
FROM: Laura Theytaz-Bergman
FAX: +41-22-740-1145
DATE: July 12, 1995

Dear Ms. Yu:

Thank you very much for the supplementary report of the Korea NGO Coalition to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was received on July 11th. The report has been delivered to the Center for Human Rights who will ensure its distribution to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 have recommended that the Committee invite the Korea NGO Coalition to participate in the working group meeting scheduled for Wednesday, November 22 from 10:00-1:00 in order to provide it with additional information or answer questions arising from the written information. Should this be the case, the NGO Group would be able to provide funding for one representative of the Korea NGO Coalition to attend the Committee meeting (airfare to Geneva, four nights hotel and meals). Invitations to attend the meeting will be issued during the month of September.

I will contact you as soon as I receive confirmation of this invitation. In the meantim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should you need any additional information.

Best Wishes,

Laura Theytaz Bergman

Laura Theytaz-Bergman
Coordinator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roupe des ONG pour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 l'enfant
Grupo de ONGs para la 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del niño

TELEFAX

TO: Ms. Yu Eun-Suk
FAX: 00822-715-9186
FROM: Annemieke Wolthuis
FAX: +41-22-740-1145
DATE: October 20, 1995

Dear Ms. Yu,

Thank you for the letters of October 17 and today and the accompanying information.

It is difficult to plan informal meetings with Committee members on forehand. Often they are willing to meet while they are in the UN. On Monday the 20th or Tuesday the 21th there probably will time during the lunch break or after the session to arrange a short meeting. Therefore when you arrive we can check with the members. The Centre for Human Rights suggests that you meet with Ms. Marta Santos Pais and Mr. Swithun Mombeshora, who are designated "experts" on South Korea. I spoke this morning with Ms. Marta Santos Pais and she is willing to meet you on Tuesday the 21th, which we can verify when you are here. The only member of the Committee from your region is Ms. Flora Eufemio from the Philippines who might also be available.

Please find attached a short summary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which will give you a better idea of whom you would like to meet. It is not sure if they will be present during the pre-sessionai working group. Previous meetings have been held with only five to seven members attending.

Look forward to receiving your arrival dates.

Sincerely,


Annemieke Wolthuis

Short Summary**Member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Ms. Hoda Badran, Egypt, 1991-1997***

- *Member,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Professor of Social Research and Community Participation,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Helwan, Cairo
- Former Secretary-General, National Council for Childhood and Motherhood

Ms. Akila Belembaogo, Burkina Faso, 1991-1999

- *Chair-perso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Special Advisor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Former Minister for Social Action and the Family
- Founding member of the Burkina Faso NGO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Ms. Flora Eufemio, Philippines, 1991-1997

- *Vice-Chairperso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Officer-in-charge, Council for the Welfare of Children
- Former Undersecretary for Attached Agencies (National Council for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Mr. Thomas Hammarberg, Sweden, 1991-1999

- *Vice-Chairperso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Economist, teacher, journalist
- Swedish Ambassador for Child Affairs
- Former Secretary-General Rädna Barnen (Swedish Save the Children) and former Secretary-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Ms. Judith Karp, Israel, 1995-1999

- *Member,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Deputy Attorney General of Israel concentrating on legislation and policy co-ordination in the area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welfare and the rights of children
- Served as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Legislation of the Israeli Ministry of Justice

Mr. Yuri M. Kolosov, Russian Federation, 1991-1999

- *Member,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Professor in International Law, Moscow University
- Chair of th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Law at the Moscow St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1987
- UNESCO Chair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since 1994

Ms. Sandra Prunella Mason, Barbados, 1991-1999

- *Member,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Teacher, lawyer and Magistrate of district and family courts in Barbados
- Former her country's ambassador to Venezuela and Colombia

Mr. Swithun Mombeshora, Zimbabwe, 1991-1997

- *Member,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Minister of State for Local Government, Rural and Urban Development
- President's personal representative to the Planning Commission on the World Summit for Children

Ms. Marta Santos Pais, Portugal, 1991-1997

- *Rapporteur,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Adviser in the Office of Documentation and Comparative law
- Lecturer, Faculty of Law, International University of Lisbon

Ms. Marilia Sardenberg, Brazil, 1991-1997

- *Vice-Chairperso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sulate General of Brazil in Rotterdam, the Netherlands
- Former Executive Co-ordinator to th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of the Brazilian Ministry of External Relations, Brasilia, Brazil

year of election and end of term

19.10.1995

인권 자료실		
등록일	원류기호	자료번호
	A7-1	37

동아일보 3/16



1995년 3/16

「어린이-청소년 권리연대회의」 결성식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등 19개 어린이 청소년권익 관련단체들이 15일 오후 3시 서울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 결성식을 가졌다.

「연대회의」는 올해 7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한국아동이 처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련 민간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것이다.

결성식에서 「연대회의」의 공동대표인 韓勝憲변호사는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나서서 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 속에 잘못된 점이나 과장이 있다면 이를 바

자) 李起範숙명여대교수(교육학) 李元寧중앙대교수(유아교육) 李基淑이화여대교수(유아교육) 徐俊植씨(인권운

때: 1995. 3. 15(수) 오후 3시

곳: 흥사단 강당



왼쪽부터 韓勝憲 李潤求 朱貞一 李起範 徐俊植씨.

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성식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韓勝憲변호사 李潤求한국선명회회장 朱貞一씨(아동학

동 사랑방대표)등과 관련단체회원 1백여명이 참석했다.

(鄭恩玲)

한겨레 3/16

1995년 3/16

「어린이 인권보호」 새 장이 열린다

16개단체 「연대회의」 결성...소외어린이 문제 진지한 고민

양상우 기자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감시·개선하기 위해 인권 및 사회·교육단체들이 함께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역타아소연합회 등 16개 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공동대표 한승헌·이오덕) 결성식을 가졌다.

외국의 경우 어린이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

한 관심이 적었다는 점에서 국내 최초로 결성된 연대기구인 「연대회의」는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의 새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성된 연대회의는 먼저 「어린이 권리조약」의 이행여부를 관장하는 유엔 산하 「어린이 권리위원회」에 국내 어린이 인권상황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의 권리조약」은 어린이의 지위향상을 위한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정의하고 있으며 지난 89년 제정돼 한국을 포함한 1백59개 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이와 관련해 참가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보고서 작성 자체가 어린이 인권에 관심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논의와 계획을 모으는

광범위한 공적 토론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연대회의측은 이날 결성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소외받은 어린이들의 처지가 갈수록 악화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단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권리에 대한 세계적 문헌으로 평가되고 있는 「어린이 권리조약」의 국내 홍보와 어린이 학대 감시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실무간사를 맡은 류은숙(29·여)씨는 「눈부신 경제적 성장이라는 명성의 뒷전에서 해외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함께 들어온 어른들이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